

의안번호	제 822 호
의 결 연 월 일	2021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기창 의원 등 8인
발의연월일	2021년 8월 일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김기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2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8월 일
발 의 자 : 김기창, 서동학, 박우양,
연철흠, 전원표, 황규철,
송미애, 이상식

1. 제안이유

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,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징수방법 변경(안 제3조)

- 현행 수입증지 → 개정안 수입증지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화폐, 전자결제 등

나. 수수료의 면제 변경(안 제4조)

-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 시험 및 검사 →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이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 등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 의 :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

라. 조례안 예고 : 2021. 8. 18. ~ 2021. 8. 23.(의회 홈페이지)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중 “제53조1항에 따라 산출” 을 “제53조제1항에 따라 정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소요되는” 을 “드는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관계공무원” 을 “관계 공무원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수입증지” 를 “수입증지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” 로 한다.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일정규모” 를 “일정 규모” 로, “충청북도내” 를 “충청북도 내” 로, “시공사간” 을 “시공사 간” 으로 하며, 같은 호 가목 중 “30%이상” 을 “30퍼센트 이상” 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50%이상” 을 “50퍼센트 이상” 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“60%이상” 을 각각 “60퍼센트 이상” 으로 한다.

1.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이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 등
제5조제2항 중 “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 을 “「지방 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수수료) ① 품질시험 및 검사 수수료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3조1항에 따라 산출하고,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비운반 차량에 <u>소요되는 경비</u> 2.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에 따른 <u>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</u> <p>제3조(징수방법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충청북도 <u>수입증지</u>로 징수한다.</p> <p>제4조(수수료의 면제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</u> 	<p>제2조(수수료) ① ----- ----- ----- <u>제53조제1항에 따라 정</u>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<u>드는</u> ----- ----- 2. ----- ----- <u>관계 공무원</u>----- ----- <p>제3조(징수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수입증지, 정보통신망을 이</u> <u>용한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</u> <u>방법으</u>-. -----</p> <p>제4조(수수료의 면제)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이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 등</u>

2.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를 충청북도 내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간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

가.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30%이상 약정한 업체

나.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을 50%이상 약정한 업체

다. 충청북도에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60%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

라. 충청북도에 등록된 장비를 60%이상 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

제5조(수수료의 징수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2. -----

----- 일정 규모

----- 충청북도

내 -----

-- 시공사 간 -----

가. -----

- 30퍼센트 이상 -----

나. -----

50퍼센트 이상 -----

다. -----

----- 60퍼센트 이상 -----

라. -----

- 60퍼센트 이상 -----

제5조(수수료의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「지방행정제재·부

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-

-----.

관 계 법 령

[지방자치법]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[전자정부법]

제14조(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)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, 수수료, 과태료, 과징금, 범칙금, 벌금, 과료 등을 현금, 수입인지, 수입증지,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[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]

제29조(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)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·수입인지·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[전자정부법]

제14조(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)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, 수수료, 과태료, 과징금, 범칙금, 벌금, 과료 등을 현금, 수입인지, 수입증지,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